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, 조산(早産) 위험 시 출산 휴가 조기 사용 인정 등으로 여성 공무원의 임신·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, 감염 여부 검사,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복무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(안 제20조 제12항)

-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, 체외수정 시술은 난자채취일과 시술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시술 등의 전·후일에 대하여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일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

나.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
(안 제19조 제2항 제3호)

- 기존에는 유산·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었으나,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

다. 임신부 공무원의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 제한 확대(안 제11조 제2항)

-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명할 수 없었으나, 이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

라.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(안 제19조 제13호)

-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(확진검사) 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 신설

마.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

- 기관별 복무 실태 확인·점검 대상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(안 제8조의3)
-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정비(안 제16조의3)
- 공가 부여 기간 구체화 및 공가 관련 근거 법률 용어 변경(안 제19조)
- 토·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문구 명확화(안 제2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9. 17. ~ 10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출퇴근”을 “출퇴근, 유연근무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시부터 오전 6시”를 “9시부터 오전 8시”로 한다.

제16조의3제1항 중 “사용하지”를 “제16조 제5항, 제1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절차”를 “절차, 연가보상비 지급방법”으로 한다.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간”을 “기간 또는 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오염지역”을 “검역관리지역”으로, “오염인근지역”을 “중점검역관리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·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

제20조제2항제3호 중 “유산·사산”을 “조산(早産)·유산·사산”으로 하

고,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“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”를 “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여성공무원의 경우

가. 난자 채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: 난자 채취일 1일, 시술일 1일,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의 전일 또는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로 부터 2일 이내의 날 중 2일

나. 난자 채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: 시술일 1일, 시술일 전
· 후일 중 1일

2. 남성공무원의 경우 : 시술일 1일

제22조 단서 중 “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”을 “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이 30일 이상이 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8조의3(복무 실태의 확인·점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		제8조의3(복무 실태의 확인·점검) ①	-----	

1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, <u>출퇴근</u> , 당직, 휴가,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		1.	-----	
			-----	<u>출퇴근</u> , <u>유연</u>
			-----	<u>근무</u> -----
			-----	-----
2. ~ 5. (생략)		2. ~ 5.	(현행과 같음)	
② ~ ④ (생략)		② ~ ④	(현행과 같음)	
제11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·② (생략)		제11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·②	(현행과 같음)	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<u>10시부터 오전 6시까지</u> 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③	-----	

			-----	<u>9시부터 오</u>
			-----	<u>전 8시</u>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1.·2. (생략)		1.·2.	(현행과 같음)	
④·⑤ (생략)		④·⑤	(현행과 같음)	

제16조의3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제19조(공가)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「검역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

제16조의3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제16조 제5항, 제1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및 제2항-----

-----.

④ -----

--- 절차,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-----.

제19조(공가) -----

----- 기간 또는 시간 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

-- 검역관리지역 -----
----- 중점검역관리지역 -----

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
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

<신 설>

제20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

1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·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

제20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
③ ~ ⑪ (생략)

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조산(早産)·유산·사산-----

③ ~ ⑪ (현행과 같음)

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여성공무원의 경우

가. 난자 채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: 난자 채취일 1일, 시술일 1일,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의 전일 또는 난자 채취일과 시술일로부터 2일 이내의 날 중 2일

나. 난자 채취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경우 : 시술일 1일, 시술일 전·후일 중 1일

⑬ ~ ⑯ (생략) 제22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가를 제외한 <u>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</u>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	2. 남성공무원의 경우 : <u>시술일 1일</u> ⑬ ~ ⑯ (현행과 같음) 제22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이 30일 이상인</u> 되는 ----- 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복 무 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45